예 산 총 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16,385,054	27,491,552
일반회계	847,196,820	25,415,905
특별회계	69,188,234	2,075,647
공기업특별회계	64,910,974	1,947,329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6,745,894	1,102,377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8,165,080	844,952
기타특별회계	4,277,260	128,318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411,692	72,351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655,497	49,665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10,071	6,30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1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20년 명시이월 사업은 붙임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688,95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0,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또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